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박성민
전화 053-570-4390 / 팩스 053-570-4242

보도자료

2021. 5. 20.(목)

제 목

○○군의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대구서부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(팀장 부장검사 이준호)은 ○○군 의원 A△△(58세)의 부패방지법위반 사건을 '21. 5. 3.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였는바,
 - 군의원인 A△△은 의정활동 중 알게 된 ○○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인근 토지(2억 2,300만 원)를 취득하고, 위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주어 인근 토지(1억 5,300만 원)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어, 5. 20. 구속 기소하였음
- 피고인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(토지·판매대금)은 이미 몰수·추징에 대한 보전 조치가 되어,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임
 -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개발사업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조치 완료되었음

1

공소사실 요지

-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

'18. 10.경 ~ '19. 9.경 ○○군 '주요업무보고' 등을 통해 ○○군 일대에 도시 개발사업이 곧 시행될 것임을 알게 된 후, '19. 11. 1.경 아들 명의로 인근 ㉠ 토지 (2억 2,300만 원)를 매입하고, 위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주어 동생으로 하여금 '19. 11. 20.경 인근 ㉡ 토지(1억 5,300만원)를 매입하도록 함

2

수사 경과

- '21. 4. 26. 구속영장 발부(4. 30. ㉠ 토지 관련 몰수·추징보전 인용, 5. 4. ㉡ 토지 관련 몰수보전 인용)
- '21. 5. 3.~18. 송치 후 당청 보완수사 → 5. 20. 구속 기소
 -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, 부패방지법에 관한 면밀한 법리검토를 한 후 구속기소

3

수사 의의

-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, 군의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 기소하였음
-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몰수·추징보전 조치되었고,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개발정보를 전달받은 동생이 매수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조치되어,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임. ☐